
**2026년 경남지역 제조업체
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 용역
과업지시서**

2026. 5.

|| 목 차 ||

I. 과업 개요	1
II. 과업 범위	1
III. 과업 수행지침	4
IV.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	8

1

과업 개요

□ 과업개요

- 과업명 : 2026년도 경남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
-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6년 8월 21일(금) 까지
- 추정금액 : ₩30,000,000원(금삼천만원정) ※ 부가가치세포함
-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
□ 과업목적

- 경남지역 제조업체의 국적별 및 비자별 외국인력 고용 현황 파악
-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
- 외국인력 채용시장의 미스매칭 정도와 원인 분석

2

과업 범위

1. 과업의 개요

□ 과업기간(예정)

-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8월 21일(금)까지
 - 과업기간
 - 조사 실시: 2026. 6. 15.(월)~ 8. 7.(금)
 - 조사 원자료(raw data) 파일 제출: 2026. 8. 10(월)
 - 보고서 제출: 2026. 8. 10(월)
- ※ 상세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협의 가능

□ 조사방법

- 정량조사 :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, 전화·이메일·팩스·우편 조사
 - ※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 시 전화·이메일·팩스·우편 병행
- 조사규모
 - 사업체 조사 및 외국인근로자 조사의 세부 표본 수는 경남비자지원센터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함
- 조사대상
 - 사업체 조사 : 외국인력을 고용 중인 경남지역 제조업체의 대표자, 인사·노무 담당자 또는 현업·기술부서 책임자
 - 외국인근로자 조사 : 조사대상 사업체에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

2. 과업의 내용

□ 문헌조사 수행

- 경남지역 외국인력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 조사 및 분석

□ 정량조사 설문지 배포 및 회수

- 정량조사 : 경남지역 제조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대상 외국인력 채용시장 실태조사
 - ※ 세부 표본 수는 경남비자지원센터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함
- 조사내용

구분		조사내용
사업체	현황	○ 사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표준산업분류, 주요 생산품명, 소재지, 내외국인 인력 구성, 규모, 매출액 등
	외국인 고용 현황	○ 국적별/비자별 외국인력 고용 현황 및 외국인력 도입 직종 ○ 외국인 채용경로, 고용 사유, 평균 근속기간 ○ 최근 3년간 외국인 비중 변화 등
	기타	○ 내외국인 평균 임금 외국인 채용에 따른 애로사항 ○ 외국인력 추가로 도입이 필요한 직종 및 건의 사항 등

외국인 근로자	인적 특성	○ 국적, 성별, 연령, 학력, 체류 자격, 한국 최초 입국 연도, 현 직장 근속기간, 한국어 능력
	입국 및 이동	○ 취업 경로, 취업 준비기간, 송출기관 이용 여부, 수수료 ○ 직업, 고용 형태, 근로시간, 급여 수준, 평균 근로시간, 야간·휴일 근로 빈도 등
	언어	○ 언어소통에 따른 작업 지시 이해 어려움 등
	소비 송금 등	○ 거주 형태, 월 평균 생활비, 월 평균 송금액, 주요 소비 항목 ○ 지역 정착 의향, 체류 희망 기간, 지역 정착 이유 등
	기타	○ 숙련기능인력으로 지역 정착을 위한 건의 사항 등

※ 조사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

□ 분석 및 조사 보고서 작성

- 정량조사의 데이터 처리 및 빈도분석, 교차분석, 분석 보고서 작성 등
- 문헌조사 데이터와 정량조사 데이터 간의 비교 분석 등
- 기타 경남비자지원센터 요청 추가 분석 등
- 제언(시사점), 경남 외국인력 정책 방향 도출, 경남비자지원센터의 역할 및 방향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등

3 과업 수행지침

□ 일반사항

- 본 용역은 제반법규 및 조례·규칙 등을 준수하여 법규에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자는 경남비자지원센터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함
-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,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, 요청 자료의 경우 허위로 제출할 수 없음
- 경남비자지원센터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및 과업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

- 과업완료 후 과업성과에 누락, 오류, 불분명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·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

□ 과업의 착수

- 과업의 착수 시 용역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,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, 인원 투입 계획 및 세부 공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

□ 참여인력

- 본 과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연구조사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들로 용역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경남비자지원센터는 해당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
-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경남비자지원센터의 승인을 받되 이로 인해 본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
- 참여인력은 매월 1회 이상의 과업 수행에 대한 내용을 경남비자지원센터에게 보고하고, 이를 통해 과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

□ 보안대책

-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는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
-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때에도 해당 인력의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- 경남비자지원센터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,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습득한 과업수행 일체의 정보를 경남비자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,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음
- 과업수행자는 사업체 및 외국인근로자 조사 시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개별 응답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조사 결과는 통계 작성 및 과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

□ 과업의 변경 또는 조정

-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남비자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
-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조정, 과업 성과품의 규격,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경남비자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

□ 과업 감독의 권한

- 용역 감독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, 공정별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·감독할 권한을 가지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경남비자지원센터는 과업수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경남비자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
- 경남비자지원센터는 과업수행자에게 과업내용 및 조사에 대한 일정 진행 상황 및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

□ 용역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

-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
- 또한, 본 과업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

-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
- ②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과업수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
-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
- ④ 보완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발주자의 보완요구에 위배 될 경우
- ⑤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, 또는 용역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되었을 경우

□ 저작권 관리

-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,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“계약

상대자”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

-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“발주자”와의 협의 없이는 외부 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
- 계약상대자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음

□ 성과물의 권리 및 관리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, 조사 결과 일체는 경남비자지원센터에서 소유하며, 경남비자지원센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·양도할 수 없음
-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경남비자지원센터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함

4

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

□ 과업성과물

- 최종 보고서 인쇄본 3부
- 최종 보고서 전자파일(hwp, pdf) 1식
- 사업체 조사 설문지 최종본 1부
- 외국인근로자 조사 설문지 최종본 1부
- 사업체 조사 원자료(raw data) 파일 1식
- 외국인근로자 조사 원자료(raw data) 파일 1식
- 응답업체 목록 1식
- 조사원 조사 교육 및 현장 사진 자료(해당 시) 1부
- 위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등

□ 보고서 작성 및 성과물 관리

- 보고서는 명시한 기한(2026. 8. 10(월))까지 제출하여야 함
 - ※ 제출 일정은 경남비자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
- 보고서 작성 시 그 내용, 순서, 편집방법 등을 경남비자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
-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, 오류,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경남비자지원센터로부터 재검토,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·보완하여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해 생성된 조사자료는 경남비자지원센터의 소유로 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